

부패방지정책



윤리적 성실한 사업활동에 대한 책임

대상 주식회사는 윤리적으로 성실한 행동을 실천해 뇌물수수 방지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의 준수를 철저히 하여 사회 윤리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리적 성실한 사업활동 실행에 대한 책임은 대상 주식회사의 모든 임원과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나아가 협력사와 그 외의 관계자에 의한 윤리적 성실한 사업활동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대상 주식회사의 사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경우, 대상 주식회사는 이러한 협력사에 대해서도 윤리적 성실한 사업활동에 대한 대처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대상 주식회사 가치관·정책과의 관계

대상 주식회사는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법령 준수가 최저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이해한다. 법령 준수는 기업으로서 활동상 불가결하며 모든 기업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다. 이 윤리부패정책은 대상 주식회사의 기업 이념에 근거하여, 이 책임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 주식회사의 윤리준법경영시스템, 윤리 강령 및 행동 지침을 보완하는 것이다.

1. 뇌물수수 금지

- 누구에 대해서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뇌물의 제공·제안·약속을 하지 않으며(증뢰) 뇌물의 요청, 수령(수뇌)을 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 등(이하 「공직자」라고 함)에 대해서 이른바 급행료/청탁금 (facilitation payment)를 포함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수수 행위는 실시하지 않는다.
- 대상 주식회사의 대리인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등(이하 「협력사」라고 함)에 대해서 본 기본정책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 '증뢰'는 영업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직무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및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안 또는 약속을 말한다.
- '수뇌'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금전 및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는 것 또는 그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뇌물수수'는 증뢰와 수뇌를 말한다.

2. 뇌물수수방지체제의 확립

- 임직원, 협력사 등에 대해서 본 기본정책의 주지 철저를 실시하는 등 뇌물수수 방지 관련 법령의 준수에 필요한 추진 체제를 확립한다.
- 임직원, 협력사 등이 뇌물수수 방지 관련 법령이나 본 기본정책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신문고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담 및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 보고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확립한다.
- 뇌물수수방지 체제는 뇌물수수사건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갖춘다.

3. 뇌물수수 리스크의 평가와 필요한 통제절차

- 뇌물수수방지 관련 법령에 관한 리스크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리스크에 상응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정비·운용한다.

4. 적정한 회계처리·기록과 모니터링

-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본 기본정책을 준수하고, 회계장부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기록·보관한다.
- 적정한 회계장부 기록 및 보관 상황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 자율 점검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그 준수절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에 따라서 개정·개선을 실시한다.

5. 벌칙/징계

- 뇌물수수 방지 관련 법령이나 본 기본정책을 위반한 임직원을 사내 규정 등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분한다.

윤리적·성실한 사업활동 실행의 책임 수행

대상 주식회사는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청탁금지법⁴⁾의 실행을 통해서 책임을 완수할 것을 맹세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준법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갈 것이다. 윤리준법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는 잠재적 또는 실제 뇌물수수에 대한 영향을 식별, 분석, 평가하는 것이나 리스

크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윤리준법의 영향이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계속적으로 검증해 갈 것이다.

또한, 대상 주식회사가 윤리적 성실한 사업활동 실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거나 이것에 관여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사내외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그 구제에 충실히 임한다.

대상 주식회사는 사업 활동을 하는 각각의 지역에서 그 나라의 국내법 및 규제를 준수한다.

대상 주식회사는 본 정책이 회사의 모든 활동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적절한 교육 및 능력 개발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리적 성실한 사업활동의 실행에 대한 잠재적 및 실제의 영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협의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ⁱ ISO37301 모든 조직이 효과적인 전사적 규범준수경영시스템에 의해 조직은 관련 법규, 규제적 요구사항, 업계 규약, 조직의 기준 및 모범지배구조(good governance),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수사례(best practices), 윤리 및 커뮤니티의 기대를 준수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ⁱⁱ 청탁금지법은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제공을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법인·단체 또는 개인 포함)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 법과 관련하여 자발적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에 따라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